위임전결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265호

위임전결 시행세칙

확 정 일 : 2024년 12월 31일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위임전결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가. 위임전결 체계 정비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

2. 주요골자

가. 안전·회계 분야 외 일상·반복 업무 등에 대한 전결권 하향

나.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위임전결 사항 정비

붙임 : 위임전결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위임전결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 **정부 경영평가 지적사항 조치**, 조직·인력 실태조사 **의견수렴 반영** 등 **위임전결 정비**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효율적 업무수행 지원**

2. 개정방향

○ **안전·회계 분야 외** 일상적이고 **고도의 의사결정 불요**한 전결권 하향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법규·사규 합치**되도록 전결권 신설·강화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 신설 등 전결사항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1 **안전·회계 분야 외** 중요도 고려하여 전결권 하향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기 존	변 경
직속 (사장,부사장)	경영관리 및 조직관리	5. 직제규정 범위내에서의 직제규정 시행세칙		
		(위임전결시행세칙 포함)의 조정		
		나 .일반사항	부사장	본부장
		7. 운영인력 조정·시행	부사장	본부장
주거복지	전세임대	4. 전세임대 임대공급 및 임대관리		
		자. 소송관리	(지역)처장	(지역)팀장
	공공리모델링	7. 지자체 사용검사 및 승인신청	(지역)처장	(지역)팀장
건설안전	자재 및 지식관리	1. 신기술·신공법 도입		
		다. 기술심의 요청	처장	팀장
토지주택 연구원	연구지원	21. 신기술·신공법 도입		
		다. 기술심의 요청	처장	팀장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기 존	변 경
	품질시험	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견본세대 측정		
		가. 측정 접수 및 결과 통보	처장	팀장

2 안전 관련 법규 및 사규 정합성 등 고려하여 전결권 신설·강화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기 존	변 경
공정경영	노사협력	20. 산업안전보건 업무		
		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업무		
		1) 위험성평가 등 계획 수립 및 시행	처장 – (지역)처장 –	사장 본부장 (지역)본부장 사업단장
		2)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사장 – (지역)본부장 –	사장 본부장 (지역)본부장 단장
건설안전	재난·안전	8. 반기별 안전보건의무 이행점검		
		나. 이행점검 결과 보고 및 개선대책 수립	사장 –	사장 (지역)본부장

3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 사항 신설 및 전결사항 명확화 등 기타 정비

○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전결권 신설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기 존	변 경
직속 (사장,부사장)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1.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운영		
		가. 중요사항	–	부사장(★)
		나. 일반사항	–	처장
		2. 내부통제 추진계획 수립운영		
		가. 중요사항	–	부사장(★)
		나. 일반사항	–	처장
		3. 내부통제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청렴시민		
		감사관 운영		
		가. 중요사항	–	사장
		나. 일반사항	–	처장
		4.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기 존	변 경
		1) 중요사항	-	사장
		2) 일반사항	-	처장
		나. 이해충돌방지제도 자문기구 운영		
		1) 중요사항	-	사장
		2) 일반사항	-	처장

○ 안전 업무 일원화에 따라 중복 사항 삭제 등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기 존	변 경
건설안전	건설관리 및 개발	13. 방재상황실 운영	처장	(삭제)
		15. 건설관리(하도급, 환경 등) 업무기준 수립	팀장	팀장
		16. 건설공사 현황 및 환경 관리	팀장	팀장
	재난·안전	10. 건설관리(안전, 방재 등) 업무기준 수립	-	팀장
		11. 건설공사 안전 관리	-	팀장

○ 미수행 업무 위임전결 삭제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기 존	변 경
건설안전	시공과정 합리화	1. 직할시공 시범사업 운영방안 수립	본부장	(삭제)
		2. 직할시공제 주요 업무기준 수립	처장	(삭제)
		3. 직할시공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처장	(삭제)
		4. 직할시공 건설관리지침서 제·개정	처장	(삭제)
		5. 직할시공 전문시방서 제·개정 및 관리	처장	(삭제)
		6. 직할시공 공사관리비 운영기준 수립	처장	(삭제)
		7. 직할시공 공사관리비 집행(설계변경 승인 포함)	본부장	(삭제)

○ 전결사항 수정 등 위임전결사항 정비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기 존	변 경
주택사업	분양주택 관리	28. 장기수선계획 관련 업무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	본부장
		나. 단지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장기수선	-	(지역)본부장
		계획 수립·개정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기 존	변 경
주거복지 토지사업	임대관리 용지취득	8. 주거복지지사 운영방안 수립	-	-
		21. 실시계획 승인이전 용지 취득계획 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다음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잔지) 매수		
직속 (사장,부사장)	판매	18. 용지(토지사용권) 공급		
		카. 잔여지(잔지) 또는 법면부지의 처리 결정	-	-
		타. 잔여지(잔지) 또는 법면부지의 공급	-	-
공통사항 지역(사업) 본부	공통	21. 출장·시간외·휴일·야간근무·조퇴·외출·출근 등		
		근태관리		
		사. 3급직원 이하(주거급여센터 소속직원)	-	☆
		24. 휴가, 병가, 결근계 처리		
		바. 3급직원 이하(주거급여센터 소속직원)	-	☆
		52. 공사법에 관련된 본부 또는 지사 소관사항의	-	-
		등기, 법인등기부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신청·관리		
		53. 인장 보관 및 관리, 날인	-	-

○ 주기, 적용예시 정비

구분	기존	변경
주기 3	☆ 표시는 중간결재자(부장 직하급 직위자) 전결사항이며, 중간결재자 부재시는 직상급 직위자가 결재권을 행사한다.	☆ 표시는 중간결재자(팀(부)장 직하급 직위자) 전결사항이며, 중간결재자 부재시는 직상급 직위자가 결재권을 행사한다.
주기 5	사장, 부사장 및 본사본부장 직속 부서장(단장, 센터장, 토지주택박물관장, 준법감시관 등)은 처·실장 전결권을 행사하며, 본사 및 지역본부 '팀'단위 단장, 지사장, 센터장 등은 팀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사장, 부사장 및 본사본부장 직속 부서장(단장, 센터장, 토지주택박물관장 등)은 처·실장 전결권을 행사하며, 본사 및 지역본부 '팀'단위 단장, 지사장, 센터장 등은 팀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적용예시 8	- 사업본부, 현장사업단에서도 내근 처장에게 결재 - 지역본부장의 전결권을 처장이 위임받은 사항	- 사업본부, 현장사업단에서도 내근 처장에게 결재 - 지역본부장의 전결권을 처장이 위임받은 사항
적용예시 9	- 내근, 현장사업단에서는 내근 처장, 사업본부는 사업본부장에게 결재 - 현장사업단장에게 전결권이 없기 때문에 내근 처장에게 결재	- 내근, 본부 직속 현장사업단에서는 내근 처장, 사업본부 및 소속 현장사업단에서는 사업본부장에게 결재 - 현장사업단장에게 전결권이 없기 때문에 내근 처장, 사업본부장에게 결재

위임전결 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임전결 시행세칙 일부개정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4. 12. 31.>

이 시행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 시행세칙

제정 2009.10. 1 시행세칙 제 2호 개정 2010. 1.25 시행세칙 제 35호
개정 2011. 3. 2 시행세칙 제 44호 개정 2011.10.12 시행세칙 제 58호
개정 2012. 3.23 시행세칙 제 68호 개정 2013. 8. 1 시행세칙 제 87호
개정 2014. 9.24 시행세칙 제105호 개정 2015. 1.13 시행세칙 제116호
개정 2015. 7.22 시행세칙 제120호 개정 2016. 1.17 시행세칙 제135호
개정 2016. 7.27 시행세칙 제142호 개정 2017.12.18 시행세칙 제157호
개정 2018.12.18 시행세칙 제172호 개정 2019. 3.22 시행세칙 제175호
개정 2019. 6.27 시행세칙 제177호 개정 2019.12.11 시행세칙 제187호
개정 2020. 5.19 시행세칙 제197호 개정 2020. 7.30 시행세칙 제200호
개정 2020.12.17 시행세칙 제204호 개정 2021.12.31 시행세칙 제219호
개정 2022. 1.12 시행세칙 제220호 개정 2022. 8. 9 시행세칙 제230호
개정 2023. 4.25 시행세칙 제234호 개정 2023.12.29 시행세칙 제244호
개정 2024.12.31 시행세칙 제265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직제규정」에 따라 권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 직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권한의 위임전결(사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이 그 결재권한의 일부를 소속 하부직위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조(권한과 책임)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위임사항) 소속 하부조직에의 권한위임(사장의 권한 중 일부를 하부직위에 위임하여 그 직위의 명의와 책임 하에 처리하게 함을 말한다) 사항은 「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 분장된 그 소관업무와 같다.

제5조(지휘·감독) 상급직위자는 이 시행세칙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직속 하급직위자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지역본부장 및 사업본부장은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본사의 업무에 대하여도 적극 협조하고, 본사 본부장 및 부서장은 지역본부 현안 등에 대해 즉시 지원하여야한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조직관리 부서장은 감사 및 인사 담당 부서장에게 사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결기준 등) ① 직위별 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장

 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사항

 나. 각 부문별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다. 중요 업무의 처리결과 보고

 라. 본부장 간 중요 업무의 조정

2. 부사장

 가. 기본방침에 따른 중요 시행계획 및 절차의 결정

 나. 중요 업무에 관한 대외기관 협의 총괄

 다. 관장부서 내 업무의 총괄 조정

3. 본부장(토지주택연구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기본방침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절차의 결정

 나. 중요 업무에 관한 대외기관 협의 총괄

 다. 관장부서 내 업무의 총괄 조정

4. 처장(본사의 실장, 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처리 총괄

나. 기본방침에 따른 업무협의 및 추진

다. 중요 업무에 관한 집행 및 대외기관 협의 추진

5. 팀(부)장(지역본부 처장, 사업본부장, 단장, 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3.12.29>

가. 기본방침에 따른 업무처리

나. 업무처리계획의 입안

다. 일상 업무에 관한 집행 및 대외기관 협의

라.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마. 경미하고 단순한 일상 업무 처리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사장 결재사항과 부사장 이하 직위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유사한 전결사항 등)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과 제7조제1항의 전결기준 등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9조(긴급사항의 처리) ①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제외한 일부 절차(결재단계,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말한다)를 생략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 후 그 권한 행사자는 지체 없이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자기 권한사항 중 업무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중 긴급을 요

하는 사항은 시행 후 지체 없이 상급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의 제한) ①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보다 상급직위자인 사장을 포함한 임원 등이 특별히 지정한 사항은 상급직위자가 지정한 사람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상급직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사항 중 부동산투기, 인명사고 및 붕괴사고 발생 등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와 협의를 거쳐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이 시행세칙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제10조의2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25.]

제10조의2(사전보고)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방침 및 계획 수립, 제도개선, 공사 및 용역 발주계획, 중요사업 인허가 계획, 계약 및 심사 등 경영 관련 중요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상당한 예산, 투자 등이 수반되거나 파급효과가 있는 중요사업 진행 및 변경 상황(계약 및 심사, 사회공헌 및 홍보활동, 개발사업, 해외사업, 자산관리 등)
2. 정부정책과 연계된 중요사업 및 재무구조 관련 사정변경 및 대응방안
3. 국민 편익, 정책사업, 부동산 시장 관련 국가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
4. 부서장 등 전결권자가 사업, 재무, 자산, 정책 등 제반 경영활동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사항

5. 중대하자 및 안전사고 등 사건ㆍ사고 발생(예상)에 따라 대외 부정적 이슈가 우려되는 사항 <신설 2023.12.29>

[본조신설 2023. 4. 25.]

제11조(합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일시부재로 인한 권한대행) ① 전결권자가 출장, 결근,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그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또한 업무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는 미리 그 권한대행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분장별 직속 하급직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 경우 그 권한대행자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 반복적인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 경우 그 대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권한대행자가 진다.

제13조(단장・팀(부)장・센터장의 전결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단・팀(부)・센터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사장·부사장 및 본부장 직속 단장·팀(부)장·센터장은 처·실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14조(전결권한의 재위임) ① 각 직위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속 하급직위자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위임할 전결 권한을 명확히 하여 조직관리부서장과 문서로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조직관리부서장은 기한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결재경로) ① 전결권에 따른 기안자 및 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2023. 4. 25, 2023. 12. 29>

<table>
<tr><th colspan="2">결재 또는 전결권자</th><th>기안자</th><th colspan="5">결재경로</th></tr>
<tr><td rowspan="4">본사</td><td>사장</td><td>팀(부)장</td><td colspan="2">처장,실장</td><td colspan="2">본부장,원장</td><td>부사장 사장</td></tr>
<tr><td>부사장,본부장,
원장</td><td>팀(부)원</td><td colspan="2">팀(부)장</td><td colspan="2">처장,실장</td><td colspan="2">부사장,본부장,
원장</td></tr>
<tr><td>처장,실장</td><td>팀(부)원</td><td colspan="2">팀(부)장</td><td colspan="2">처장,실장</td><td colspan="2">-</td></tr>
<tr><td>부장</td><td>팀(부)원</td><td colspan="2">팀(부)장</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지역본부
·특별본부·
사업본부</td><td>부사장,
본사 본부장</td><td>차장*
이상
팀(부)원</td><td>팀(부)장</td><td>처장,
단장</td><td>지역
본부장
지사장</td><td>본사
협조</td><td colspan="2">부사장,
본사 본부장</td></tr>
<tr><td>본부장</td><td>차장*
이상
팀(부)원</td><td colspan="2">팀(부)장</td><td colspan="2">처장,단장</td><td colspan="2">본부장</td></tr>
<tr><td>처장,단장</td><td>팀(부)원</td><td colspan="2">팀(부)장</td><td colspan="2">처장,단장</td><td colspan="2">-</td></tr>
<tr><td>부장</td><td>팀(부)원</td><td colspan="2">팀(부)장</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 개인별 업무분장 등에 따라 담당업무가 명확한 경우 과장이하 기안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재경로에 차장 이상 부원(단, 회계결의서 심의자는 제외한다.)의 검토를 추가한다. 다만, 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장이 검토하거나, 지역·독립 사업본부의 주거복지 사업처(부, 센터)에서 대리(4급) 이상이 검토하면 차장 이상 부원이 검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25>

1. 회계결의서(기안자와 대결 등을 포함한 최종 결재자가 동일할 수 없다.)

2. 기안자가 5급 이하 직원(업무직원 포함), 사업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하 “AMC”라 한다.)의 근무자

3. 지급자재 구매방식 중 MAS1단계, 수의계약 방침(단, 지급자재관리 심의위원회 선정 심의를 받은 경우 제외) <신설 2023. 4. 25>

부 칙<2009.10. 1>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5>

이 시행세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2>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23>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1>

이 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24>

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3>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22>

이 시행세칙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7>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27>

이 시행세칙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8>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22.>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27.>

이 시행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1.>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19.>

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30.>

이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7.>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1.>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2.>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9.>

이 시행세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25.>

이 시행세칙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9.>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31.>

이 시행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7조 제2항 관련 <개정 2024. 12. 31.> * 별도 파일 첨부